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의료법령 제34조(원격의료)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원격 진료실을 갖추어야 하나, 인터넷 PC가 설치된 일반진료실에서도 원격 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토의과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복지부 내 의견 조회 완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9조(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 ② <u>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 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제1항제1 호에 따른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다.</u>